

◎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883호

「주택법」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

2022년 07월 05일

국토교통부장관

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

- 지정해제 지역 : 경기도 안산시 일부(단원구 대부동동·대부남동·대부북동·선감동·풍도동), 경기도 화성시 일부(서신면), 대구광역시 동구·서구·남구·북구·중구·달서구·달성군, 경상북도 경산시, 전라남도 여수시·순천시·광양시
- 해제일 : 2022년 7월 5일
- 효력발생시기 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※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

시·도	현 행	조 정('22.7.5.)
서울	서울특별시 전역(25개區)	좌동
경기	과천시, 성남시, 하남시, 동탄2택지개발지구 ^{주1)} , 광명시, 구리시, 안양시(동안구, 만안구), 광교택지개발지구 ^{주2)} , 수원시(팔달구, 영통구, 권선구, 장안구), 의왕시, 고양시, 남양주시 ^{주3)} , 화성시, 군포시, 부천시, 안산시, 시흥시, 용인시(수지구, 기흥구, 처인구) ^{주4)} , 오산시, 안성시 ^{주5)} , 평택시, 광주시 ^{주6)} , 양주시 ^{주7)} , 의정부시, 김포시 ^{주8)} , 파주시 ^{주9)} , 동두천시 ^{주10)}	과천시, 성남시, 하남시, 동탄2택지개발지구 ^{주1)} , 광명시, 구리시, 안양시(동안구, 만안구), 광교택지개발지구 ^{주2)} , 수원시(팔달구, 영통구, 권선구, 장안구), 의왕시, 고양시, 남양주시 ^{주3)} , 화성시 ^{주24)} , 군포시, 부천시, 안산시 ^{주25)} , 시흥시, 용인시(수지구, 기흥구, 처인구) ^{주4)} , 오산시, 안성시 ^{주5)} , 평택시, 광주시 ^{주6)} , 양주시 ^{주7)} , 의정부시, 김포시 ^{주8)} , 파주시 ^{주9)} , 동두천시 ^{주10)}
인천	중구 ^{주11)} 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	좌동
부산	해운대구, 수영구, 동래구, 연제구, 남구, 서구, 동구, 영도구, 부산진구, 금정구, 북구, 강서구, 사상구, 사하구	좌동
대구	수성구, 중구,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달서구, 달성군 ^{주12)}	수성구

광주	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	좌동
대전	동구, 중구, 서구, 유성구, 대덕구	좌동
울산	중구, 남구	좌동
세종	세종특별자치시 ^{주13)}	좌동
충북	청주시 ^{주14)}	좌동
충남	천안시 동남구 ^{주15)} , 서북구 ^{주16)} , 논산시 ^{주17)} , 공주시 ^{주18)}	좌동
전북	전주시 완산구, 덕진구	좌동
전남	여수시 ^{주19)} , 순천시 ^{주20)} , 광양시 ^{주21)}	-
경북	포항시 남구 ^{주22)} , 경산시 ^{주23)}	포항시 남구 ^{주22)}
경남	창원시 성산구	좌동

- 주1) 화성시 반송동·석우동, 동탄면 금곡리·목리·방교리·산척리·송리·신리·영천리·오산리·장지리·중리·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
- 주2)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·원천동·하동·매탄동, 팔달구 우만동, 장안구 연무동,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,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
- 주3) 화도읍, 수동면, 조안면 제외
- 주4) 처인구 포곡읍, 모현읍, 백암면,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·사암리·미평리·좌항리·맹리·두창리 제외
- 주5) 일죽면, 죽산면, 삼죽면, 미양면, 대덕면, 양성면, 고삼면, 보개면, 서운면, 금광면 제외
- 주6) 초월읍, 곤지암읍, 도척면, 퇴촌면, 남종면, 남한산성면 제외
- 주7) 백석읍, 남면, 광적면, 은현면 제외
- 주8) 통진읍, 대곶면, 월곶면, 하성면 제외
- 주9) 문산읍, 파주읍, 법원읍, 조리읍, 월롱면, 탄현면, 광탄면, 파평면, 적성면, 군내면, 장단면, 진동면, 진서면 제외
- 주10) 광암동, 결산동, 안흥동, 상봉암동, 하봉암동, 탑동동 제외
- 주11)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, 무의동 제외
- 주12) 가창면, 구지면, 하빈면, 논공읍, 옥포읍, 유가읍, 현풍읍 제외
- 주13)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418호(2006.10.13.)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,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

- 주14) 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, 남이면, 현도면, 강내면, 옥산면, 내수읍, 북이면 제외
- 주15) 목천읍, 풍세면, 광덕면, 북면, 성남면, 수신면, 병천면, 동면 제외
- 주16) 성환읍, 성거읍, 직산읍, 입장면 제외
- 주17) 강경읍, 연무읍, 성동면, 광석면, 노성면, 상월면, 부적면, 연산면, 벌곡면, 양촌면, 가야곡면, 은진면, 채운면 제외
- 주18) 유구읍, 이인면, 탄천면, 계룡면, 반포면, 의당면, 정안면, 우성면, 사곡면, 신평면 제외
- 주19) 돌산읍, 율촌면, 화양면, 남면, 화정면, 삼산면 제외
- 주20) 승주읍, 황전면, 월등면, 주암면, 송광면, 외서면, 낙안면, 별량면, 상사면 제외
- 주21) 봉강면, 옥룡면, 옥곡면, 진상면, 진월면, 다압면 제외
- 주22) 구룡포읍, 연일읍, 오천읍, 대송면, 동해면, 장기면, 호미곶면 제외
- 주23) 하양읍, 진량읍, 압량읍, 와촌면, 자인면, 용성면, 남산면, 남천면 제외
- 주24) 서신면 제외
- 주25) 단원구 대부동동·대부남동·대부북동·선감동·풍도동 제외